

문서번호 : KB수탁사업부 437

2024-11-25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참 조 : 집합투자기구 공시 담당자

제 목 :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요청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247 조(운용행위감시등) 및 법제 249 조의 8(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) 제 2 항 5 호입니다.
3. 신탁업자인 KB 국민은행은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 영업일 이내(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)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4. 귀사(행)는 아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로서 귀사(행)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집합투자업자: 칸서스자산운용

나. 집합투자기구명: 칸서스비비우스 2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

다. 설정일: 2009년 4월 7일

라. 제한사항:

- 자본시장법제 85 조의 5 호
- 내용: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
마. 위반사항:

- 위반일: 2024년 11월 18일
- 위반내용: 일시적 현금부족으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차입거래
- 신탁업자 시정요구(위반통보): 2024년 11월 20일
-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: 2024년 11월 21일 상환

KB 국민은행 수탁사업부장

